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ΣΣ Σ ΣΣΣ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 * 시 √√√√과 예서는 관내 * * 읍 00리 00-0번지 일원에 ΣΣ Σ ΣΣΣ 조성사업을 '16.9.29. (주)ⅡⅡ건설 대표 ⅡⅡⅡ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6.10.4.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데크에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이페나무(m²당 244,387원)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데크가 실외에 설치되고 자재가 특별한 기능 없이 지나치게 고가인 점 등으로 자재를 변경 예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자재변경 및 과도한 자재비 00,000천원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축물의 층고가 높지 않아 강관동바리 사용이 가능함에도 건축물 일부 211m²에 고가의 시스템동바리를 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으며,

합판거푸집의 경우 비노출부위에 사용횟수를 3회를 적용하였으나 비노출 부위에는

4회적용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한 감액조치 하지 않았으며,

타일붙이기는 떠붙임이 경제적임에도 압착붙이기를 반영 공사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12.15.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ㄹㄹㄹㄹ ㄹㄹㄹㄹ(※※지구)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ㄴㄴㄴㄴ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 ㄴㄴㄴㄴ과 에서는 관내 00읍 00리 00-0번지 일원에 ㄹㄹㄹㄹ ㄹㄹㄹㄹ(※※지구) 건축공사를 '14.5.22. (주)ΣΣΣ건설 대표 ∴ ∴ ∴과 도금액 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4.5.27.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단지 내 차량통행로에 인조화강석포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규모 차량 통행 및 다수의 캠핑촌 이용객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고 인조화강석 포장이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조설비 가동됨에도 환기를 위한 환기창의 환기계폐기가 155개소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되어 환기계폐기 67개소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고,

철골조부분의 현장정리비용을 철근콘크리트조를 반영 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계상한 사항이 있으며,

또한 표준틀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광파기사용으로 미설치 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천원을 감액조치 하지 않았고,

철골공사 먹매김품은 철골세우기품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가설공사 항목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으며,

건축물 옥상에 1)청소용고리(파라펫팅)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 건축물은 지상2층으로 불필요 함에도 공사비 0,000천원을 감액조치 하지 않았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12.15.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용고리(파라펫팅) : 건축물 외벽청소 등을 위해 줄을 묶을 수 있도록 건물옥상에 설치한 고리로 고층건물에 설치되며 지게차 접근이 가능한 저층건물에서는 필요치 않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UUUUUUUU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 ∫ ∫ ∫ ∫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 ∫ ∫ ∫ ∫ ∫ ∫ 소득개발과 예서는 관내 **읍 00리 000번지 일원에 ** UUUUUUUU 조성사업을 '14.12.26. ∞∞∞∞ 건설(주) 대표 ∞∞∞와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4.12.30.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페인트 도색은 2회 시공으로도 양질의 마감확보가 가능함에도 3회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고,

철근가공은 공장가공이 경제적임에도 현장가공을 반영 공사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건축물 하부 터파기한 잔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장에서 유용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천원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12.15.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터널 접속도로) 정비공사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건설과
내 용

※※시 √√과에서는 2015. 12. 15. ∫ ∫ 건설(대표이사 ∫ ∫ ∫)와 “ 도로 (::::터널 접속도로) 정비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5. 12. 18. 착공하여 2016. 12. 11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2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 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아스팔트 추출체가름시험 외 8종의 품질시험비 0,000천원(제경비 제외)를 반영하고서도 시공사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00 00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착공시 제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공사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특허공법 검토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제4장 제3절에 따르면 신기술, 특허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부서가 기본설계·실시 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율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 한 후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주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설계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도로(::::터널 접속도로) 정비공사에 특허 공법(00형라멘 콘크리트빔)을 적용하면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검토 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부검토 및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흙막이 가설공사 시공 부적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을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터널 접속도로) 정비공사에서는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재사용 H형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시설공사 말뚝으로 사용하였는데도 품질 및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공한 사실이 있다.

4.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현장 가설 창고 미설치

감사기간 공사 현장을 확인 결과 가설사무실만 존치하고 가설창고는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천원(:::터널접속도로 000천원, ~~000~~ ~~000~~ ~~000~~ 000천원, 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나. 면고르기 과다 적용

~~000~~ ~~000~~ ~~000~~ 확포장공사의 경우 굴삭기(백호0.7m³)를 이용하여 토사 흙깎기 작업시에는 절토면 면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음을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면고르기품을 적용함으로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다. 지급자재 구매 부적정

~~000~~ ~~000~~ ~~000~~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식생 옹벽블럭을 구매함에 있어 관급 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함으로서 불필요한 제경비 등 0,000천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00과
내 용	

※※시 00과에서는 2015. 3. 6. (주) //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5. 3. 10. 착공하여 2017. 2. 2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00과에서는 함수비시험(토공)외 27종에 대한 품질시험비 0,000천원(세경비 제외)을 반영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 받고서도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공사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 L형측구 시공 부적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의 배수는 노면수의 흐름지체, 월류, 지하수 유입 등으로 도로 하부지반이 약화되거나 포장의 손상 등을 방지하고,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에 내린 우수를 L형측구, 집수정 등의 노면 배수시설을 통하여 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로 노면의 배수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및 도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L형 측구를 설치하며, 측구의 연장 시공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사 L형 측구의 경우 시공후 매몰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인 합판거꾸집 6회를 적용함에 타당함에도 시공성이 나쁜 유로품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0,000천원(세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나. 세륜세차시설 등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시에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차량속도의 규제,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덮개설치 등으로 저감 시키는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사에서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1개소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1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세륜세차시설과 가설방음벽은 환경보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 여건상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 과다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세륜세차시설 감 00,000천원, 가설방음벽 감 00,000천원)을 설계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사토장 토공사 부적정

사토장 복구를 위하여 사토장내 양질의 토사 절취 및 집토와 복토, 그리고 바닥면 고르기 등 3가지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토장 복구의 경우 토사를 절취하여 사토장내 집토하고 사토 완료 후 바닥 면고르기를 통하여 복구작업 완료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복토공종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불필요한 복토 공종을 설계에서 제외하지 않는등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종합정비사업 외 2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2014. 10. 8. (주)ⅡⅡ(대표이사 ⅡⅡⅡ)와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4. 10. 15. 착공하여 2016. 12. 12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3건의 농어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 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현장밀도시험 등 38종의 품질시험비 0,000천원(제경비 제외, 00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반영하고서도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공사가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흙막이 가설공사(H-PILE+토류벽) 시공 부적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을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00면 소재지 종합정비공사에서는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재사용 H형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설말뚝으로 시공하였는데도 품질 및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공한 사실이 있다.

3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하여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면서 당초 2인 1조 20일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나 사유없이 103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 과다계상 하였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추진 하면서 당초 기계90%+인력10%을 반영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나 사유없이 기계80%+인력20%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 하였으며,

현장사무실의 경우 컨테이너 가설사무실을 반영하고도 별도의 현장사무실 임대료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반영한 사실이 있다.

나. 00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현장가설사무실을 컨테이너 가설사무실과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중복반영함에 따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 한 사실이 있고,

□□□□□□ 신축에 따른 철근가공조립 경제적인 가공은 “공장”, 조립은 “현장” 조립이 적정함에도 경제적이지 못한 현장가공및조립을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 하였고,

우수공 터파기의 경우에는 기계(굴삭기 0.7m³)100%와 기계(굴삭기 0.7m³)90%+인력10%로, 되메우기의 경우 기계(굴삭기 0.7m³)90%+인력10%+플레이트컴팩트 또는 램머다짐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 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터파기의 경우 기계(굴삭기 0.7m³)100%로 되메우기의 경우 기계(굴삭기 0.7m³)90%+인력10%+플레이트컴팩트 다짐으로 실시공하였으므로 과다계상 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설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그대로 둔 사실이 있다.

다. □□□ □□□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현장 가설사무실을 조립식 가설사무실과 숙소, 창고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현장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조립식 가설사무실 등을 설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우수공 U형 측구 시공에 따른 철근가공및조립은 가공은 “공장”, 조립은 “현장” 조립이 경제적인에도 현장가공조립을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 하였고,

수로암거 시공을 위한 거푸집은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유로폼이 적정함에도 합판거푸집을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사 3건에서는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 00읍 소재지 00,000천원, 00면소재지 00,000천원, 00면 소재지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C C C C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C C C C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2016. 4. 6. 00건설(주) 000과와 계약체결하여 2018. 3. 3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가도 파형강관 설치 관련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편에 의하면 철물, 흙관, 강재류 등 사용자재 별로 3개월~1년이상으로 사용기간별로 구분하여 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공사 00새마을2교 외 8개소 교량가설을 위한 가도설치에 소요되는 파형강관(D1000mm)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철물공사 손율(3개월,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설계시 파형강관(D1000mm, L=901m)을 신규로 구입하는 자재단가 적용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2. PP마대 쌓기 관련

건설공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본 공사의 00새마을2교 외 교량 8개소 가설을 위한 가도 및 물막이를 위한 법면에 설치하는 마대쌓기는 단가가 경제적인 톤마대 쌓기(00,000원/EA당)를 적용하지 않고, 고가인 PP마대 쌓기(00,000원/㎡당)를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3. 교대 뒤펀 채움 다짐장비 관련

「시방서 기준」에 의하면 구조물 뒤펀 채움기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 장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뒤펀 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펀 채움부 다짐을 할 때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펀 채움부와 맞추어 하도록 되어 있다.

본 공사 00새마을2교 외 교량 8개소의 교대 뒤펀 채움 뒤펀 채움기 및 다짐 장비는 다짐밀도를 충족하면서 단가가 경제적인 진동로울러 다짐(0,000원/㎡당)를 적용하지 않고, 고가인 콤팩터 다짐(0,000원/㎡당)를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C C C ΣΣΣΣ 살리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C C C C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 시 C C C C 과에서는 C C C ΣΣΣΣ 살리기사업을 2014. 10. 13. IIII건설(주) II II과 계약체결하여 2017. 5. 2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골재 운반거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공사는 석산에서 구입하는 골재(10,559㎡) 운반거리는 설계상 L=33.8km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운반거리는 현장(* * * 00리)에서 골재장(00개발, 00면 00로)

까지 L=28.3km(감5.5km)로, 공사비 66,416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 톤마대 쌓기 관련

또한, 본 공사 교량가설을 위한 가도설치 법면의 톤마대 쌓기는 사면길이 1.57m를 기준으로 전체 A=1,612㎡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톤마대 1.0m(1단)로 전체 A=1,030㎡로 설계보다 A=582㎡ 적게 시공하였음에도 감액·설계변경 없이,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C C C C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C C C C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2014. 6. 10. (주) ∟ ∟ 건설 ∟ ∟ 과 계약체결하여 2017. 4.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저류지 뎀스설치 관련

본 공사에서 저류지는 홍수시 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하천의 유수를 저류지로 월류시켜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하는 홍수조절기능을 제공 하며, 평시에는 저류지 내 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저장함으로써, 습지 및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저류지 경계부분 전체 둘레에 메쉬웬스 H=1.5m, L=494m를 설치하도록 계획 하여, 당초 저류지 설치 목적인 홍수조절, 습지 및 여가활동 등과 맞지 않고,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메쉬웬스를 저류지 경계 전체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불필요함에도, 저류지 경계부분 전체 둘레(L=493m)에 대한 펜스 설치비 적용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2. 톤마대 쌓기 관련

본 공사 0007교 가설을 위한 가도설치 법면에 톤마대 쌓기 395m'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톤마대 쌓기가 불필요하여 미 시공(395m')하였음에도, 감액·설계변경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토목)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2013. 12. 27. △△△△△토건(주) △△△△△과 공사계약 (00,000백만원)을 맺고 2014. 1. 6. 착공하여 2017. 1. 27. 준공 예정으로 △△△△△ △△△△△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설계 변경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 발주 할 때에도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에 준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장래시설물 하자

구분 곤란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의하면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 시 √√√√과에서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유로 관련규정과 행정절차없이 특별한 설계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변경 113백만원, ∅√관리계획 변경 14백만원, 사후관리계획 수립 148백만원을 포함 용역비 275백만원을 부당 증액함으로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 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토목)을 추진 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고,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787톤 000백만원을 관급자재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사급자재에 대한 불필요한 제경비 지출 등으로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부당 설계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위반 및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000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문경시 ⅡⅡⅡⅡⅡⅡ소
내 용

※※시 ⅡⅡⅡⅡⅡⅡ소에서는 2015. 4. 13. ㄴㄴ건설(주) ㄴㄴㄴ와 공사계약 (0,000백만원)을 맺고 2015. 4. 17. 착공하여 2017. 12. 31. 준공 예정으로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외 2건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ⅡⅡⅡⅡⅡⅡ소에서는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시공상세도에 대한 작성기준,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목록도 없이 단순공정인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불필요한 시공상세도 작성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2. 가정내 배수설비 관련

또한, 00 00리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내 배수설비 계획 시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가장 경제적인 노선으로 계획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화장실 및 부엌 오수관로를 동시에 일괄시공할 수 있는 구간을 각각의 노선으로 계획하여 터파기 물량 등 사업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시공상세도 등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